

제183회 국회(임시회) 통상산업위원회에서

1997년 3월 14일 의결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

I. 제정이유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무고용제도중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부분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각종 영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와 입주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던 것을 전기공급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중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 설치요청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나. 기업이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자격자중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의 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적은 산업보건의등 13종의 자격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고 이러한 자격자에 대하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다. 유사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의무고용자간에 상호점직을 인정하여 고압가스제조자 등이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등 4종의 유사한 의무고용자에 대하여 그 제

조자등이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의무고용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등이 주된 영업분야에서 안전관리자등 10종의 유사한 의무고용자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의무고용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마. 중소기업자 및 제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등 5종의 유사한 안전관리자등은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바. 중소기업자 및 제조업자가 채용한 의무고용자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등 6종의 자격중 2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채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31조).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등 인접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등 7종의 의무고용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내지 제38조).

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등 9종의 의무고용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 의무고용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자. 수질오염물질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의 조업을 정지시킬 경우 대

외적인 신용이나 고용·물가 등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차. 사업장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 받는 보수교육과 전기통신공사에 종사하는 통신기술자격자가 받는 보수교육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5제4호).

카. 종전에는 디자인보호대상물품으로 지정되고 그에 대한 디자인이 등록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의장법등의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안 제55조의5조1호 및 제60조의2).

타. 수질오염물질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이들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부착등의 명령제도와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배출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55조의5제5호 및 제6호).

파. 종전에는 열사용기자재제조업, 전기용품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일반화물터미널사업, 창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영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를 폐지하여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이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60조의5·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

하. 종전에는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알선약관·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약관에 대하여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소화물운송의 운임 및 요금·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자동차대여사업의 요금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함(안 제60조의9).

거. 종전에는 엔지니어링기술을 도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신고제를 폐지함(안 제60조의14).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 수정의결

1. 수정내용

- 가. 유독물관리자,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겸직조항(안 제29조제3항) 삭제
- 나. 자율고용으로 전환되는 의무고용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부책임자에서 책임자로 강화(안 제28조제4항)
- 다. 관련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라. 개정안시행일자조정: 1997년 1월 1일 → 1997년 5월 1일

2. 촉구사항

- 가. 공동채용의 적용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
- 나. 외부위탁의 적용요건을 관련부령에서 안전·환경에 이상이 없도록 구체화
- 다. 환경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요건을 시행령에 구체화

現 行	改 正 案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u>中小企業者</u>”라 함은 <u>中小企業基本法 第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로서 製造業을 영위하는 法人 또는 개인을 말한다.</u></p>	<p>第2條(定義) -----</p> <p>-----</p> <p>1. ~ 4. (現行과 같음)</p> <p>5. “<u>中小企業者</u>”라 함은 <u>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에 의한 中小企業을 말한다.</u></p>
<p>第24條(工業團地開發事業 費用負擔에 관한 特例)</p> <p>① <u>工業團地에 電氣를 供給하는 者는 産業立地및 開發에 관한 法律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工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가 요청하는 때에 工業團地안의 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을 工業團地開發 實施計劃에서 都市計劃施設로 決定된 道路까지 設置하여야 한다.</u></p> <p>② <u>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의 設置費用은 電氣를 供給하는 者와 土地등을 分讓·賃貸 또는 承繼받는 者(이하 “<u>入住者</u>”라 한다)가 각각 100分の 50의 比率로 부담한다.</u></p> <p>③ <u>電氣를 供給하는 者는 入住者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檢査畢證을 교부받거나 臨時使用의 승인을 얻은 建築物에 電氣가 공급되는 날부터 3年間 均등하게 分割하여 回收할 수 있다.</u></p>	<p>第24條(産業團地開發事業 費用負擔에 관한 特例)</p> <p>① <u>産業團地에 電氣를 供給하는 者는 産業立地및 開發에 관한 法律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가 요청하는 경우 産業團地에 電氣를 供給하기 위한 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을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에서 都市計劃施設로 決定된 道路까지 設置하여야 한다.</u></p> <p>② <u>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産業團地에 電氣를 供給하기 위하여 設置한 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의 設置費用은 電氣를 供給하는 者가 負擔한다. 다만,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入住企業·地方自治團體 등의 요청에 依하여 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을 地中에 設置하는 경우에는 電氣를 供給하는 者와 地中에 設置할 것을 요청하는 者가 각각 100分の 50의 비율로 그 設置費用을 負擔한다.</u></p> <p>③ <u>電氣를 供給하는 者는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요청자가 負擔하여야 할 금액을 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의 設置가 완료되는 날부터 3年間 均등하게 분할하여 徵收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第3章 雇用義務의 緩和</u></p>	<p style="text-align: center;"><u>第3章 雇用義務의 緩和</u></p>
<p>第28條(安全管理者등의 雇用義務의 緩和) ①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安全管理者 또는 危險物安全管理者중 하나이상의 者를 採用하여야 하는 다음 各號의 事業者 또는 設置者가 당해 法令 規定에 의한 者를 採用한 때에는 그가 關係法令에 의하여 採用하여야 하는 나머지 者와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採用한 것으로 본다. 다만, 大統領領이 정하는 사업 또는 事業場에는 당해 業體의 安全과 관련하여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추가 採用하여야 한다.</p> <p>1. <u>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高壓가스를 製造·貯藏·販賣하는</u></p>	<p>第28條(企業에 의한 自律雇用)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해당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採用·雇傭·任命·지정 또는 選任(이하 “<u>採用</u>”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u>産業安全保健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두어야 하는 産業保健醫</u></p> <p>2. <u>食品衛生法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가 두어야 하는 食品衛生管理人</u></p> <p>3. <u>産業標準化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同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지정하여야 하는 品質管理擔當者</u></p> <p>4. <u>計量및測定에 관한 法律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量器의 製作者·修理業者 및 計</u></p>

現 行	改 正 案
<p>事業者의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量器의 自治管理를 하는 者가 두어야 하는 計量技士 및 計量技能士</p>
<p>2.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液化石油가스 充填·集團供給·販賣事業者의 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5.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에너지管理對象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에너지管理者</p>
<p>3. 都市가스事業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가스事業者의 同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6. 公衆衛生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衛生用品의 製造業者가 두어야 하는 衛生管理人</p>
<p>4. 消防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 製造所와 取扱所의 設置者의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安全管理者</p>	<p>7. 交通安全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車輛등의 使用者가 雇傭하여야 하는 交通安全管理者(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p>
<p>5. 集團에너지事業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集團에너지事業者의 同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8. 道路交通法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運轉管理者</p>
<p>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또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당해 業體의 安全과 관련하여 安全管理者등을 추가 採用하게 할 수 있다.</p>	<p>9. 集團에너지事業法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採用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p>
<p>③ 消防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특수장소를 관리하는 中小企業者 또는 中小企業者외의 者로서 製造業을 영위하는 者(이하 “中小企業者등”이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를 選任한 경우에는 同法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火管理者를 選任한 것으로 본다.</p>	<p>10. 騒音·振動規制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環境管理人</p>
<p>1.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11.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p>
<p>2.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全管理者擔當者</p>	<p>12. 消防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所 등의 關係인이 두어야 하는 危險物施設安全員</p>
<p>3.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13. 鑛山保安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鑛山保安管理職員(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p>
<p>4. 液化石油가스안전및事業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② 中小企業者와 中小企業者외의 者로서 製造業을 영위하는 者(이하 “中小企業者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集團給食所에는 食品衛生法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調理士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5.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③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安全管理者를 採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者는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도 採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6. 消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安全管理者</p>	<p>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項第2號 내지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者를 採用하지 아니한 事業場의 事業者는 당해 事業場의 副責任者(最高責任者의 直下級者 또는 그와 동일한 職級의 者를 말한다) 1人을 管理責任者로 지정하여 同項第2號 내지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者가 수행할 業務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事業者가 管理責</p>
<p>7. 集團에너지事業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④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5號와 第3項第3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및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取扱所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⑤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擬制되는 者</p>	

現 行	改 正 案
<p>를 採用한 事業者·設置者 또는 中小企業者등은 그 者の 安全管理業務 또는 消防管理業務를 規定하는 法令에 따라 選任을 申告하여야 한다.</p>	<p>任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事業場의 最高責任者를 管理責任者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者가 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第29條(中小企業者에 대한 安全管理者의 雇用義務의 緩和) ① 第28條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事業者 또는 設置者외의 中小企業者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중 하나이상의 者를 採用하여야 할 경우에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採用한 때(大統領領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한하여 同法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代行機關에 委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關係法令에 의하여 採用하여야 하는 나머지 者를 採用한 것으로 본다. 다만, 大統領領이 정하는 사업 또는 事業場에서 中小企業者가 당해 企業의 安全과 관련하여 필요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채용한 경우에는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와 그가 關係法令에 의하여 採用하여야 하는 나머지 者를 採用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2.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3.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4. 消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安全管理者 5.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物管理者 6. 道路交通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運轉管理者 <p>②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의 범위는 大統領領으로 정한다.</p> <p>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擬制되는 者를 採用한 中小企業者는 그 者の 安全管理業務를 規定하는 法令에 따라 選任을 申告하여야 한다.</p>	<p>第29條(安全管理者의 兼職 許容)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2인 이상 採用하여야 하는 者가 그 중 1人을 採用한 경우에는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나머지 者와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高壓가스製造者·高壓가스貯藏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2.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3.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4. 消防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製造所와 取扱所의 設置者가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 <p>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여야 하는 者가 그 주된 營業分野등에서 그 중 1人을 採用한 경우에는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高壓가스製造者·高壓가스貯藏者 및 高壓가스販賣者를 제외한다)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2.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를 제외한다)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3.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4. 消防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場所의 利害關係人이 選任하여야 하는 防火管理者 5. 消防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製造所

現 行	改 正 案
	<p>와 取扱所의 設置者가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p> <p>6.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p> <p>7. 鑛山保安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鑛山保安管理職員</p> <p>8. 銃砲·刀劍·火藥類等團束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火藥類製造業者 또는 火藥類販賣業者·火藥類貯藏場所設置者 및 火藥類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p> <p>9.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電氣安全管理擔當者</p> <p>10.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對象機器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p> <p>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2人 이상 採用하여야 하는 者가 그 주된 營業分野등에서 그중 1人을 採用한 경우에는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나머지 者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p> <p>1.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質管理者</p> <p>2. 消防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場所의 利害關係人이 選任하여야 하는 防火管理者</p> <p>3. 消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所등의 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p> <p>4.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電氣安全管理擔當者</p> <p>5.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對象機器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p> <p>④ 火藥類의 製造 또는 貯藏이나 鑛業을 주된 營業分野등으로 영위하는 者로서 銃砲·刀劍·火藥類等團束法 第27條 및 鑛山保安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 또는 鑛山保安管理職員(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을 採用하여야 하는 者가 그중 1人을 採用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者 각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p>

※ 통상산업 위원회에서 삭제

現 行	改 正 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2.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電氣安全管理擔當者 3.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4.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5.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6. 消防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殊場所의 利害關係人이 選任하여야 하는 防火管理者 7. 消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所등의 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 8.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 9.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對象機器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 <p>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2人 이상 採用하여야 하는 者가 그 중 1人을 採用한 경우에는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나머지 者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水質環境保全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環境管理人 2. 大氣環境保全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環境管理人 3. 産業安全保健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保健管理人 <p>⑥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第1項第4號 및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取扱所의 범위,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主된 營業分野등의 기준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採用免除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30條(安全管理등의 教育)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關係法令에 의한 安全管理教育 또는 防火管理教育을 받아야 한다.</p> <p>1.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나머지 者 및</p>	<p>第30條(中小企業者등에 대한 安全管理者 雇用義務의 緩和) ① 中小企業者가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 1人을 採用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종류·규모에 한하</p>

現 行	改 正 案
<p>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採用한 것으로 보는 者</p> <p>2.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防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防火管理者를 選任한 것으로 보는 者</p> <p>3. 第29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나머지 者를 採用한 것으로 보는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또는 第2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나머지 者 및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採用한 것으로 보는 者</p>	<p>여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代行機關에 委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다음 各號의 者 각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高壓가스製造者·高壓가스貯藏者 및 高壓가스販賣者를 제외한다)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2. 液化石油가스안전및事業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液化石油가스充填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를 제외한다)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3.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4.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 <p>② 消防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特殊場所의 關係人인 中小企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는 경우에는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火管理者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2.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電氣安全管理擔當者 3.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4. 液化石油가스안전및事業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5.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6. 消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所등의 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 <p>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또는 事業場의 中小企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그가 採用하여야 하는 나머지 者와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 각 1人도 採用한 것으로 본다.</p>

現 行	改 正 案
<p>第31條(電氣安全管理擔當者の 雇用義務의 緩和) <u>中小企業者등은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商工資源部領이 定하는 바에 따라 一定電氣容量에 未달하는 電氣設備를 保有한 者에 대하여는 電氣安全管理擔當者の 選任義務를 免除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 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u> 2. <u>液化石油가스의 安全및 事業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u> 3. <u>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u> 4. <u>消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所등의 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u> 5. <u>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u> <p>④ <u>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第2項第3號 내지 第5號 및 第3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u></p>
<p>第32條(安全管理者의 雇用義務의 緩和) ① <u>中小企業者등은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두어야 할 사업 또는 事業</u></p>	<p>第31條(2種이상의 資格證保有者에 대한 義務雇傭의 緩和) ① <u>中小企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者를 採用한 경우에 그 採用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의한 者의 資格을 2이상 가진 때에는 그 資格에 해당하는 者 모두를 採用한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u> 2. <u>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電氣安全管理擔當者</u> 3. <u>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 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u> 4. <u>液化石油가스의 安全및 事業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u> 5. <u>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安全管理者</u> 6. <u>消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所등의 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u> <p>② <u>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u></p>
<p>第32條(危險物安全管理者등의 共同採用) ① <u>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 또는 建物(이하 “産業 團地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消防法</u></p>	

現 行	改 正 案
<p>場중 勞働部長官이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告示하는 災害率이 낮은 사업 또는 事業場에 대하여는 同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安全管理者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中小企業者는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同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의 業務를 同法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代行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p>	<p>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所등의 設置者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동일 産業園地등에 있는 3이하의 製造所등의 設置者가 공동으로 危險物安全管理者를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製造所등의 危險物의 수량은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수량의 3千배미만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産業立地및開發에 관한法律 第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園地 2.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 및 同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아파트型工場이 設置된 建物 3.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 관한法律 第20條 및 이 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承認을 얻은 協同化園地 4. 大氣環境保全法 第13條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이 設置된 地域 5. 기타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集團化地域 <p>② 동일한 産業園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消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同法 第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3이하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防火管理者를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수장소의 연면적의 합계는 4萬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p>
<p>第33條(電氣安全管理擔當者등의 雇用義務의 緩和)</p> <p>① 中小企業者등이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採用한 者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資格을 하나이상 가진 때에는 그 資格에 해당하는 者를 採用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全管理擔當者 2.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3.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4.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5.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6. 消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危險物安全管理者 	<p>第33條(有毒物管理者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園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者로서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毒物管理者를 任命하여야 하는 者는 同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이하의 事業場의 事業者가 공동으로 有毒物管理者를 任命할 수 있다. 다만, 取扱制限有毒物을 취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제외한다.</p>

現 行	改 正 案
<p>7.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管理者</p> <p>8. 道路交通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運轉管理者</p> <p>9. 集團에너지事業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② 第1項第2號 내지 第4號 및 第9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이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34條(保健管理者의 雇用義務의 緩和) 中小企業者등은 勞動部長官이 産業安全保健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告示하는 有害성이 적은 사업 또는 事業場에 대하여는 同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保健管理者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第34條(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對象機器設置者는 同法 第5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3이하의 事業場의 檢査對象機器設置者가 공동으로 檢査對象機器操縱者를 採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檢査對象機器의 합계는 10대이하이어야 한다.</p>
<p>第35條(産業保健醫의 雇用義務의 緩和) 中小企業者등은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有害성이 적은 사업 또는 事業場을 경영하는 경우 産業安全保健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保健醫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第35條(電氣安全管理擔當者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電氣事業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事業者는 同法 第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3이하의 事業場의 電氣事業者가 공동으로 電氣安全管理擔當者를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總 電氣設備 規模는 1,500킬로와트미만이어야 한다.</p>
<p>第36條(調理士의 雇用義務의 緩和) 中小企業者등이 운영하는 集團給食所에 대하여는 食品衛生法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調理士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第36條(産業安全管理者등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者는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 및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3이하의 事業場의 事業主가 공동으로 安全管理者 또는 保健管理者를 採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勞動者數의 합계는 300이내 이어야 한다.</p>
<p>第37條(計量技士등의 雇用義務의 緩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가 雇用하여야 하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計量技士 또는 計量技能士를 工業振興廳長이 認定하는 소정의 教育을 받은 者로 둔 경우 이를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計量技士 또는 計量技能士를 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計量器의 製作者 2. 計量器의 修理業者 3.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 第45條의 規定에 의하 	<p>第37條(大氣環境管理인의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大氣環境保全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4이하의 事業場(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3이하의 事業場)의 事業者가 공동으로 環境管理인을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는 그 事業場이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간 固體換算燃料使用量이 1萬톤미만인 경우와 特定大氣有害物質을 排出하는 경우로서 연간 固體換算燃料使用量이 2</p>

現 行	改 正 案
<p><u>여 計量의 自治管理를 하는 者</u></p>	<p><u>千분미만이여야 한다.</u></p>
<p><u>第38條(環境管理人的 雇用義務의 緩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團地 또는 地域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者등은 水質環境保全法 第23條, 大氣環境保全法 第24條 및 騒音·振動規制法 第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法律에서 規定하는 環境管理人을 大統領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任命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工業團地 2.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 3. 中小企業振興法 第15條 및 이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 승인을 얻은 協同化團地 4. 기타 大統領領이 정하는 集團化된 工場地域 	<p><u>第38條(水質環境管理人的 共同採用) 동일한 産業 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水質環境保全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4이하의 事業場(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3이하의 事業場)의 事業者가 공동으로 環境管理人을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는 그 事業場이 1일에 배출하는 特定水質有害物質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廢水가 2千세제곱미터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特定水質有害物質이 포함된 廢水가 700세제곱미터미만이여야 한다.</u></p>
<p><u>第39條(에너지管理者등의 雇用義務의 緩和) ① 中小企業者등이 에너지 利用合理化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연료 및 열분야 에너지管理者와 同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對象機器操縱者를 각각 採用하여야 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者를 採用한 경우에는 나머지 者를 採用한 것으로 본다. 다만, 中小企業者등의 에너지使用量이 大統領領이 정하는 基準量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② 中小企業者등이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全管理擔當者와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분야 에너지 管理者중 商工資源部領이 정하는 者를 각각 採用하여야 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者를 採用한 경우에는 나머지 者를 採用한 것으로 본다.</u></p> <p><u>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擬制되는 者를 採用한 中小企業者등은 그 者의 해당 業務를 規定하는 당해 法令에 따라 選任을 申告하여야 한다.</u></p>	<p><u>第39條(共同採用者의 管理등) ① 第32條 내지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2이상의 事業場에 공동으로 採用된 者(이하 이 條에서 “공동으로 採用된 者”라 한다)에 대한 事業場별 勤務時間 기타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u></p> <p><u>② 공동으로 採用된 者는 다른 義務雇傭者(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하여야 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職務를 兼職할 수 없다.</u></p> <p><u>③ 공동으로 採用된 者가 당해 事業場에서 근무하는 時間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별 勤務時間에 미달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義務雇傭者의 職務를 兼職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場의 事業者는 당해 勤勞者를 공동으로 採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p>
<p><u>第40條(安全管理者등의 再選任期限의 緩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安全管理者 또는 環境管理인(이하 이 條에서 “安全管理者등”이라 한다)을 選任하여야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安全管理者등이 退職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등을 選任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全管理擔當者 	<p><u>第40條(安全管理등의 外部委託) ① 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業務를 主務部長官이 지정하는 管理代行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産業安全保健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두어야 하는 安全管理者 2. 産業安全保健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두어야 하는 保健管理者

現 行	改 正 案
<p>2.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3.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4. 都市가스事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5.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管理者</p> <p>6. 集團에너지事業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p> <p>7. 水質環境保全法 第23條, 大氣環境保全法 第24條 및 騒音·振動規制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管理人</p>	<p>3. 消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所등의 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危險物安全管理者</p> <p>4. 銃砲·刀劍·火藥類等團束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火藥類製造業者 또는 火藥類販賣業者·火藥類貯藏場所設置者 및 火藥類使用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p> <p>5.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對象機器設置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檢査對象機器操縱者</p> <p>6.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事業者 및 自家用電氣設備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選任하여야 하는 電氣安全管理擔當者</p> <p>7.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하여야 하는 有毒物管理者</p> <p>8. 大氣環境保全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環境管理人</p> <p>9. 水質環境保全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가 任命하여야 하는 環境管理人</p> <p>② 第1項에서 “主務部長官”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해당 長官을 말한다.</p> <p>1.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의 경우에는 勞動部長官</p> <p>2.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의 경우에는 內務部長官</p> <p>3. 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의 경우에는 通商産業部長官</p> <p>4. 第1項第7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p> <p>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代行機關의 지정요건·지정신청절차·지정의 取消·업무의 停止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部令으로 定한다.</p> <p>1.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에 關한 사항은 勞動部令</p> <p>2.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에 關한 사항은 內務部令</p> <p>3. 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者의 業</p>

現 行	改 正 案
<p>第41條(職業訓練生 資格制限의 緩和) 中小企業者 등이 실시하는 事業內 職業訓練에 있어서 職業訓練基本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向上訓練生 및 再訓練生의 資格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에 관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p> <p>4. 第1項第7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者の 業務를 受託하는 管理代行機關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p> <p>第41條(職業訓練生 資格制限의 緩和) 中小企業者 등이 실시하는 事業內 職業訓練에 있어서 職業訓練基本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向上訓練生 및 再訓練生의 資格에 관한 기준은 適用하지 아니한다.</p>
<p>第42條(法令 制定·改正시의 審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28條 내지 第40條에서 規定하는 雇用義務緩和와 관련되는 사항, 義務雇用者의 數·資格等 雇用義務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法令으로 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p>第42條(法令 制定·改正시의 審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이 章에서 規定하는 義務雇用緩和와 관련되는 사항, 義務雇用者의 數·資格 등 雇傭義務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法令으로 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p>第47條(檢査의 緩和) ① (생략) <新 設></p> <p>②·③ (생략) <新 設></p>	<p>第47條(檢査의 緩和) ① (現行과 같음)</p> <p>② 産業安全保健法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 및 設備중 프레스 또는 리프트를 사용하는 者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④ (現行과 같음)</p> <p>第54條의2(排出施設 운영자에 대한 課徵金賦課의 特例) ① 環境部長官은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중 製造業의 排出施設을 설치·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同法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操業停止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操業停止가 大외적인 信用·雇傭·物價 등 國民經濟에 현저한 支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同法 第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操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同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第1項 및 水質環境保全法 第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할 수 있는 課徵金의 金額은 水質環境保全法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3億원이하로 한다.</p> <p>③ 環境部長官은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중 製造業의 排出施設을 설치·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同法 第20條第1項의 規定에</p>

現 行	改 正 案
	<p>의하여 操業停止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操業停止가 대외적인 信用·雇傭·物價 등 國民經濟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同法 第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操業停止處분에 갈음하여 同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p> <p>④ 第3項 및 大氣環境保全法 第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課徵金의 금액은 大氣環境保全法 第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3億원이하로 한다.</p> <p>第54條의3(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에 관한 特例) ① 第55條의5第5項의 規定을 적용하는 경우에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운영하는 事業者는 당해 排出施設에서 배출되는 汚染物質이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器機를 부착하는 등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② 第55條의5第6號의 規定을 적용하는 경우에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운영하는 事業者는 당해 排出施設에서 배출되는 汚染物質이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器機를 부착하는 등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의 유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54條의4(環境管理인의 任命등 申告義務의 免除) ① 水質環境保全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 同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環境管理인의 任命 또는 變更任命을 申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大氣環境保全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는 同法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環境管理인의 任命 또는 變更任命을 申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第54條의5(汚染物質排出施設등의 讓渡·讓受 등의 申告義務의 免除) ① 水質環境保全法 第1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의 權利·義務를</p>
<新 設>	
<新 設>	
<新 設>	

現 行	改 正 案
	<p>承繼한 者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大氣環境保全法 第1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p>
<新 設>	<p>第55條의2(産業安全·保健教育의 免除) ① 産業安全保健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責任者·安全管理者·保健管理者·産業保健醫·安全 및 保健管理代行機關 從事者·事業主·管理監督者 또는 安全擔當者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安全·保健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産業安全保健法 第36條第1項 및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의 自體檢査를 실시하는 者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의 規定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p>
<新 設>	<p>第55條의3(有害·危險防止計劃書 提出義務의 免除) 産業安全保健法 第4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同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新 設>	<p>第55條의4(에너지사용량등 記錄義務의 免除)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에너지管理對象者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장부를 비치하여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設備의 설치 및 개폐상황등에 관한 記錄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新 設>	<p>第55條의5(是正指示등의 緩和) 다음 各號의 法律의 規定에 의한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是正指示등의 權限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對外貿易法 第50條 내지 第54條 2. 産業標準化法 第15條第3項·第20條 3.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18條第5項, 第36條, 第47條, 第50條, 第54條第3項, 第89條第2項·第3項 4. 電氣通信工事業法 第24條의2 5. 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第4項·第15條第3項·第18條·第24條 6. 大氣環境保全法 第14條第4項·第15條第3項·第18條·第25條 7. 有害環境物質管理法 第15條第1項第7號·同條

現 行	改 正 案
<p><新 設></p>	<p>第2項 8. 産業安全保健法 第28條第3項 9. 建設業法 第39條・第39條의2 10. 自動車運輸事業法 第25條第2項</p> <p>第60條의2(指定物品輸出規制의 緩和) 對外貿易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物品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同 物品을 輸出할 수 있다.</p>
<p><新 設></p>	<p>第60條의3(熱使用機資材製造業 規制의 緩和) ① 에 너지利用合理化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熱使用機 資材의 製造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同法 第42條 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同 製造業 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熱使用機資材의 製造 業을 하는 者로서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8條第1 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對象器機를 제조하는 者는 당해 檢査對象器機의 제조에 관하여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p>
<p><新 設></p>	<p>第60條의4(小規模發電事業에 관한 特例) 電氣事業 法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條第1號・第2號 및 第6號의 規定은 發電施設의 용량이 3千킬로와 트이하인 發電事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新 設></p>	<p>第60條의5(電氣用品製造業등에 관한 特例) ① 電氣 用品安全管理法에 의한 1種電氣用品의 製造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同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 錄을 하지 아니하고 同 製造業을 할 수 있다. ②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9條의3의 規定에 의한 2種電氣用品製造業者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9條의4의 規定에 의한 2種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 하고 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9條・第10條・第12條・ 第13條・第16條・第22條 내지 第25條의 規定을 적 용함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1種電氣用 品の 製造業을 하는 者는 이를 登錄製造業者로 본다.</p>
<p><新 設></p>	<p>第60條의6(計量器處分 제한의 緩和) 計量및測定에</p>

現 行	改 正 案
	<p><u>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計量器의 製作業者·修理業者 또는 計量證明業者는 그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計量器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同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同 計量器를 處分할 수 있다.</u></p>
<p><新 設></p>	<p><u>第60條의7(建設機械運行狀況 申告의 免除) 建設機械管理法 第13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建設機械의 運行상황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新 設></p>	<p><u>第60條의8(韓國水資源公社의 業務範圍에 관한 特例) 韓國水資源公社法에 의한 韓國水資源公社는 同法 第9條第1項第5號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 公社가 施行하였거나 施行중인 産業團地 및 特殊地域의 開發과 관련된 區域외의 地域에서 産業團地 및 特殊地域의 開發事業을 行할 수 있다.</u></p>
<p><新 設></p>	<p><u>第60條의9(自動車運輸事業에 대한 규제의 緩和) ①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自動車運輸事業의 免許 또는 登錄을 받은 者는 運送約款을 정하여 同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갈음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運送約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u></p> <p><u>② 自動車運輸事業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貨物 自動車運送事業者는 同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事業區域 指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노선에 의하여 運送하는 貨物を 集貨하고 配達할 수 있다.</u></p> <p><u>③ 自動車運輸事業法 第1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貨物 自動車運送事業者는 同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小貨物を 운송할 수 있으며, 당해 運送에 대한 運賃 및 料金を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④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自動車運送事業者가 自動車運送事業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同法 第27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갈음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u></p> <p><u>⑤ 自動車運輸事業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運送幹旋事業者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관한 運賃과 料金を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⑥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自動車運送幹旋事業</u></p>

現 行	改 正 案
	<p>者は 斡旋約款을 정하여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같음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斡旋約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⑦ 自動車運輸事業法 第55條의5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貸與事業者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自動車貸與料金を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⑧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自動車貸與事業者는 貸與約款을 정하여 同法 第55條의6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같음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貸與約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新 設></p>	<p>第60條의10(一般貨物터미널事業에 관한 特例) ① 貨物流通促進法에 의한 貨物터미널事業중 一般貨物터미널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は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同事業을 경영할 수 있다.</p> <p>② 貨物交通促進法 第28條 내지 第28條의5·第33條·第36條·第37條 및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21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貨物터미널事業을 경영하는 者は 이를 貨物터미널事業者로 본다.</p>
<p><新 設></p>	<p>第60條의11(倉庫業에 관한 特例) ① 貨物交通促進法에 의한 倉庫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は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同事業을 경영할 수 있다.</p> <p>② 貨物流通促進法 第44條·第45條 및 同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21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倉庫業을 경영하는 者は 이를 倉庫業者로 본다.</p>
<p><新 設></p>	<p>第60條의12(有毒物製造 규제등의 緩和) ①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製造業者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有毒物品目を 環境部に 登錄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輸入者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毒物の 年間 輸入品目 및 數量 등을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③ 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한 有毒物營業者가 아닌 者가 特定有毒物を 소지·사용·讓渡 또는</p>

現 行	改 正 案
<p><新 設></p>	<p><u>讓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 特定有毒物을 소지·사용·讓渡 또는 讓受할 수 있다.</u></p> <p>第60條의13(産業安全指導士등에 대한 교육의 緩和) <u>産業安全保健法 第52條의2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는 同法 第5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指導士의 登錄을 할 수 있다.</u></p>
<p><新 設></p>	<p>第60條의14(엔지니어링技術등에 대한 규제의 緩和)</p> <p>①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에 의한 엔지니어링技術을 외국으로부터 導入하고자 하는 者는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同 技術을 導入할 수 있다.</p> <p>②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에 의한 엔지니어링技術을 외국에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同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同 技術을 輸出할 수 있다.</p> <p>③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엔지니어링技術 導入契約의 체결을 申告하여야 하는 者는 도입대가가 美合衆國 通貨로 30萬달러이상인 엔지니어링技術導入契約을 체결한 者로 한다.</p>
<p>第63條(委員會의 구성등)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략)</p>	<p>第63條(委員會의 구성등) ① ----- ----- 15人 ----- ② ~ ④ (現行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①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5月1日부터 施行한다.</p> <p>② (현재 採用하고 있는 義務雇傭者에 대한 불이익의 禁止)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義務雇傭者는 이 法の 施行으로 인하여 解雇·職種轉換 기타 불이익 措置를 받지 아니한다.</p> <p>③ (適用例) 第2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産業園地開發事業의 施行者가 電氣를 供給하는 者에게 産業園地안에 電氣를 供給하기 위한 電氣幹線施設 및 配電施設의 設置를 최초로 요청하는 産業園地부터 적용한다.</p>